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조치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기업 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관내 사회적기업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처분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충족)
2. 근 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2호, 같은 법 제17조, 『2026년도 사회적기업기업 인증업무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불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6.9.29. ~ 2026.10.13. (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김 회 경 (Tel. 051-559-6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공시송달 명단						
연 번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위반사항	조치 내용	시정내용
1	주식회사 디* (제2016 -***호)	이*호 (부산 수영구 수미로47 3층)	사회적기업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미충족 (이사회 미개최)	시정 명령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반기1회 이상 개최 (이사회 회의록, 최근 등기부등본)
						2026. 10.13.(화)
						소재지 불명 (폐문 부재)

※ 경고 및 시정명령 미이행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4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제 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